

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25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회의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,
- 나. 준용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등에 따라 용어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준용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.(안 제22조의2 제2항)
- 나. 시급한 안전처리와 의원 이석 등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부족문제 등을 예방하고자 회의시작 전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5분자유발언을 의안 심사 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(안 제38조의2 제1항)
- 다. 5분 자유발언 신청시 본회의 전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“토요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”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.(안 제38조의2 제2항)

라. 회의규칙에 “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”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촉박하고, 자구정정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(자구 정정기한 연장)코자 함.(안 제52조)

마.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명확히 함.

(안 제8조, 제22조, 제36조, 제38조의2, 제47조의2, 제52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의장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03, 팩스 032-440-8762, 이메일 jinpan5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다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: 별첨

라. 비용추계서 : 미첨부(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)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출석위원”을 “출석의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의원이”를 “의원의”로 한다.

제22조의2제2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”를
“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의제외에 미치거나”를 “의제와 관련이 없거나”로 하
고, “반하여서는”을 “어긋나서는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“본회의가 개시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”를 “본
회의(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)가 개시되는 경우”로 하
고,

“다만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.”를 “다만, 의장
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
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심
의 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38조의2제2항 중 “본회의 개의 전일까지”를 “본회의 개의 전일(토
요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”로 한다.

제47조의2의 제목 “투표지의 보관 및 공개”를 “투표지의 보관 등”으
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중 “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”를 “회의록이
시의회 홈페이지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<u>출석위원</u>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. ② ~ ④ (생략)	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----- ----- ----- <u>출석의원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특별위원회 회부) ① <u>의원</u>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 (생략)	제22조(특별위원회 회부) ① <u>의원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입법 예고) ① (생략) ② 입법예고의 방법, 절차 등은 「<u>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</u>」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장”은 “의장”으로 본다.	제22조의2(입법 예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<u>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</u>」 ----- -----.
제36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① 모든 발언은 <u>의제외</u>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<u>반하여</u> <u>서는</u> 아니된다. ② (생략)	제36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① ----- <u>의제와</u> <u>관련이 없거나</u> ----- ----- <u>어긋</u> <u>나서는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(5분 자유발언)

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시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청원,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7조의2(투표지의 보관 및 공개)
(생략)

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

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② ~ ③ (생략)

제38조의2(5분 자유발언)

①----- 본회의(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)가 개시되는 경우 -----

---. 다만,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심의 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-----
--- 본회의 개의 전일(토요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-----
-----.

제47조의2(투표지의 보관 등)
(현행과 같음)

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

① -----
----- 회의록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-----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○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○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○ 제71조(회의규칙) ○ 제72조(회의록) “세부사항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.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, 주요 내용,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2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